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22.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돔 경기장의 이용료 산정용역 결과 반영,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이용료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27조)

나. 체육시설 적용범위 평창돔 경기장 시설물 추가(안 제3조)

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체육시설의 이용기간 수정(안 제10조)

라. 이용료 및 사용료 부가기준 「별표 1」 수정(안 제11조)

마.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추가

- 1회권: 10,000원, 1개월권: 90,000원, 3개월권: 240,000원,
6개월권: 420,000원, 12개월권: 720,000원

바.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추가

- 체육경기: 1일(180,000원), 오전·오후(72,000원), 조기·야간(108,000원)
- 체육활동: 1일(420,000원), 오전·오후(168,000원), 조기·야간(252,000원)
- 일반행사: 1일(600,000원), 오전·오후(240,000원), 조기·야간(360,000원)

사. 별지1~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04.19.~2022.05.09.) 결과, 제출의견 반영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개인정보 사전검토 : 개선사항 반영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의 개최를 목적으로 사

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8.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평창돔 경기장 등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에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4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5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사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등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와 같다.

제12조(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별표 5에 의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1조의 이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 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이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 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등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이용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관람료 등)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닌 자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 우대자

② 제2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이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매 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안의 범위에서 군수와 이용자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이용이 끝난 직후 이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22조(위·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위·수탁관리자는 군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위·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①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연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 관련)

○ 이용료 및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 관리위탁시설을 제외한 체육 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110,000	
테니스장(1면)		25,000	35,000	
공도장		12,000	1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60,000	
족구장		10,000	15,000	
야구장		20,000	3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골프연습장		15,000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10,000	
파크골프장		20,000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무료	

○ 실내체육시설의 일부이용 및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기준임 •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 골프연습장 정기권 구매 시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1회권	10,000	
1개월권	90,000	
3개월권	240,000	
6개월권	420,000	
12개월권	720,000	

○ 평창돔 경기장 이용료

(단위: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1일	4시간	조기/야간 4시간	
체육경기	180,000	72,000	10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 09:00부터 18:00까지 •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 •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 공과금(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임. • 배드민턴, 탁구장 등 기타종목 사용을 위한 일일입장 시 1인당 요금·이용시간 등은 일반체육시설 이용료 및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체육활동	420,000	168,000	252,000	
일반행사	600,000	240,000	360,000	

※ 체육활동이란 동아리, 모임 등의 비공인 체육활동을 뜻하며
운동회, 체육대회 등은 일반행사로 한다.

[별표 2]

중계방송 기본액

(단위 : 원)

종 별	단위		중계방송료			비 고
			TV	인터넷	라디오	
체육행사 및 경기	국제	1회	70,000	40,000	30,000	• 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국내	1회	30,000	22,000	15,000	
공연 등 행사	국제	1회	70,000	40,000	30,000	
	국내	1회	30,000	22,000	15,000	
체육행사 이외	1회		30,000	22,000	15,000	
영화촬영	1회		100,000			
경기촬영	1회		50,000			
•녹화 •라디오 녹음	1회		TV 중계방송료의 반액 라디오 중계방송료의 반액			

[별표 3]

상행위 등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선전 또는 광고게시물	•1등급(1㎡미만)	5,000	•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1장당)
	•2등급(1㎡이상 ~2㎡이하)	7,000	
	•3등급(2㎡초과)	10,000	
2. 기타선전광고 행위 (경기장, 체육관 등의 상업용 홍보간판 등)	•소형(3.5㎡이하)	30,000	•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1장당)
	•중형(3.5㎡초과~5㎡이하)	50,000	
	•대형(5㎡초과~13㎡이하)	150,000	
	•초대형(12㎡초과)	200,000	
3.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1개월간	15,000	
4. 기타	•시설물의 유형 크기 및 기간에 따라 적용		

※ 공익을 저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불허할 수 있다.

[별표 4]

관람 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액

(단위 : 원)

구 분	이용료 징수	비 고
일반경기	관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관람 수입 총액의 25퍼센트	
연고로 한 프로경기	관람 수입 총액의 15퍼센트	

[별표 5]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 초과이용시 이용료 징수액

(단위 : 원)

구 분	이용료 징수	비 고
전용이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연습이용시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전용이용이란 체육행사 등 경기의 경우를 말하고,
 연습이용이란 전용이용외의 훈련 및 연습의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이용목적 (행사명)				
이용시설 (시설명)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이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예상 사용인원	명	
	년 월 일 시까지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우리군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허가	「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u> 」 <u>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별지 제3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귀 단체)의 체육시설()이용(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합니다.

신 청 인	단체명(성명) : 주 소 :
이용허가내용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이 용 목 적 (행 사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이 용 회 수	
이 용 료	-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기 타	

- 조건 1.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용료는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이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이용목적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사 유				
<p>「평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 명 : (인)</p>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p>평창군은 우리군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이용료감면자격 여부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관계법령 발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영욱
연락처	(033) 330 - 2020